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7915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3851	서천호의원	2024.9.10.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2024.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 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2207811	전종덕의원	2025.1.24.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 소위 직접 회부(2025.2.7.)
	2209501	임미애의원	2025.4.1.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 소위 직접 회부(2025.4.21.)
	2209841	윤준병의원	2025.4.15.	
	2209915	이원택의원	2025.4.17.	

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6.1.13.)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3.11.)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현행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5년 12월 말로 그 기한이 도래함.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로 농어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미국·EU산 우유·치즈, 2028년 호주산 쇠고기 등 기존 FTA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농어가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정안은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

을 5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간”을 “15년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